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내용

1.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각 단계별 기준(2021년 7월 1일~)
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단계 명칭	■지속적 억제상태 유지	■지역 유행/인원 제한	■권역 유행/모임 금지	■ 대유행/외출 금지
결정·조정 권한	■시군구, 시도, 중대본	■시군구, 시도, 중대본	■시군구, 시도, 중대본	■중대본
기준	■인구 10만명당 1명미만 (주간평균)	■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(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)	■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(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)	■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(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)
	▶ 전국: 500명 미만	▶ 전국: 500명 이상	▶ 전국: 1,000명 이상	▶ 전국: 2,000명 이상
	▶ 수도권: 250명 미만	▶ 수도권: 250명 이상	▶ 수도권: 500명 이상	▶ 수도권: 1,000명 이상
모임	■방역수칙 준수	■ 8명까지 모임 가능 (9인 이상 시적모임 금지)	■ 4명까지 모임 가능 (5인 이상 시적모임 금지)	■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(3인 이상 시적모임 금지) *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
행사	■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	■ 100인 이상 행사 금지	■ 50인 이상 행사 금지	■행사 금지
집회	■500인 이상 집회 금지	■ 100인 이상 집회 금지	■ 50인 이상 집회 금지	■1인 시위 외 집회 금지

2.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별 준수 사항(2021년 7월 1일~)

기타 시설					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	
종교시설	■수용인원의 50% (좌석 한 칸 띄우기)	■수용인원의 30% (좌석 두 칸 띄우기)	■수용인원의 20% (좌석 네 칸 띄우기)	■비대면	
	■ 모임/행사, 식사, 숙박 자제 *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	■ 모임/행사, 식사, 숙박 금지 * 실외행사 가능(100인 미만)	■ 모임'행사, 식사, 숙박 금지 * 실외행사 가능(50인 미만)	■ 모임/행사 식사 숙박 금지	

3.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각 단계별 세부 실행방안(2021년 7월 1일~)

1 1단계

- (종교활동)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%(좌석 한 칸 띄우기), 모임/행사·식사·숙박 자제하되,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야외행사 가능
 - 1인 초과하는 성가대·찬양팀, 통성기도, 책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
 - 다만, 백신 접종자(1차 접종자 포함)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,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, 소모임 운영 가능

2 2단계

- (종교활동)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%(좌석 두 칸 띄우기), 모임/행사·식사·숙박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실외행사(100인 미만) 가능
 - 1인 초과하는 성가대·찬양팀, 통성기도, 책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
 - 다만, 백신 접종자(1차 접종자 포함)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,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, 소모임 운영 가능
 - 무료급식·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(무료봉사)

3 3단계

- (종교활동)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20%(좌석 세 칸 띄우기), 모임/행사·식사·숙박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실외행사(50인 미만) 가능
 - 1인 초과하는 성가대·찬양팀, 통성기도, 책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
 - 다만, 백신 접종자(1차 접종자 포함)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,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, 소모임 운영 가능
 - 무료급식·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(무료봉사)

4 4단계

- (종교활동)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, 모임/행사·식사·숙박 금지
 - 무료급식·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(무료봉사)

4.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방안

구분	1차 접종자 (1차 접종 후 14일 경과)	예방접종 완료자 (2차 접종 후 14일 경과)	
사적모임	직계가족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	직계가족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	
		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	
행사·집회	÷	행사·집회 제한 인원에 미포함	
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 미포함		이용인원 제한에 미포함	
	-	이용인원 제한에 미포함	
실내 다중이용시설	-	(검토예정)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 등에서 음식섭취, 응원·함성, 스탠딩공연 허용	
	정규 종교활동 시 인원 제한에 미포함	정규 종교활동 시 인원 제한에 미포함	
종교활동	-	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, 소모임 운영 가능	

5.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행 향후 계획

□ 개편 시행 시기 및 적용 방안

- (시행시기) 7.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의 재편 진행
 - 유행상황의 안정적 관리,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, 시범적용 확대 등 지역의 준비도 충실히 이루어지는 점 등 고려하여 7.1일 시행
- (적용방안) 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조정하여 2주간 (7.1~14)의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 가능
 -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는 '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'하는 2주간(7.1~14)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

<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 단계적 실행방안 >

	현행 조치	이행기간	개편(안) 전면시행
수도권	■ <u>5인</u> 이상 사적모임 금지	■ <u>7인</u> 이상 사적모임 금지	■ <u>9인</u> 이상 사적모임 금지
(2단계)		(6인까지 사적모임 허용)	(8인까지 사적모임 허용)

□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 등 후속 발표 일정

- (후속 발표) 그 외 7월 1일부터 적용할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와 수도권 이외 지자체의 이행기간(2주)의 적용 여부 및 적용 시 세부 내용 등
 - 다음 주 유행상황을 평가하며,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6월 말 거리두기 체계 전환 이전에 중대본 보고 후 발표 예정

6. 종교시설 관련 O&A

Q1.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?

○ 종교시설(종교인, 종교단체 등)

Q2.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?

-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(종교인, 종교단체 등)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
 - * 예배(주일 예배, 수요 예배, 새벽 예배 등), 미사(주일미사, 새벽미사 등), 법회(초하루법회 등), 예회(아침좌선, 월초기도 등), 시일식 등 종교활동
 -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단계에서 큰 소리로 함께 기 도·암송하는 행위(예, 통성기도 등) 및 성가대 운영* 및 모임도 금지
 - * 성가대·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만 가능

Q3. 정규 종교활동(미사법화예배시일식 등)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?

- 단계별 참여인원* 기준에 따라,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**하여 참여
 - * 1단계 수용인원의 50%(한 칸 띄우기), 2단계 30%(두 칸 띄우기), 3단계 20% (네 칸 띄우기), 4단계 비대면
 - ** 예)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경우, 100석 미만의 종교시설에서 30명 이 내로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여 참여가 가능

○ 종교시설 관리자·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, 개별 공간(예, 예배실 등)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

Q4.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(숙박포함), 식사는 가능한지?

-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, 숙박,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1단 계인 경우 자제를 권고하며, 500명 이상 모임·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사전 승인이 필요함
 - ※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, 기 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심방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, 각 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
- 2단계 이후에는 정규 종교활동 외의 모든 대면 모임 활동·행사 등이 모두 금지*됨
 - 다만, 2~3단계의 예외로서 단계별 거리두기 기준 및 기본방역수칙 등*을 준수하여 행사 일반 기준 규모**로 실외행사가 가능함
 - * 실외행사 시 식사·숙박 금지 / 마스크 상시 착용, 큰소리로 다함께 노 래하기 등 금지,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등 소모임 최소화 필요 등 준수
 - ** 2단계 100명 미만(99명까지 가능), 3단계 50명 미만(49명까지 가능)

Q5. 수련원, 기도원,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?

- 기도원 수련원,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임
 - 따라서,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거리 유지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(Q3 참고)

- 단,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, 숙박,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모두 금지됨
 - ※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, 기 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심방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,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

Q6.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(강사)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?

-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.
 - 단, 방송법,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(지상파, 케이블, IPTV 등)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"방송 출연"에 해당하여 설교자(강론, 법문, 설교 등)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
-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(유튜브 등)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, "방송출여" 적용은 곤란함
 - 단, 사적 공간(별도의 분리된 공간)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
- ※<u>'마스크 착용'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</u> 참조

Q7.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(연합단체)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?

○ 종교시설의 재정(회계),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 요한 경우에 한하여 - 거리두기, 마스크 착용, 주기적 환기소독, 음식섭취 금지,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,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·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

Q8.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(장소)을 빌려서 행사(결혼식, 장례식 등)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?

-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·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, 결혼식은 '결혼식장', 장 례식은 '장례식장', 공연은 '공연장'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 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
 - *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'식당' 방역수칙 적용

Q9. 1단계 종교시설 주관으로 식사·숙박이 가능한데, 종교시설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되는지?

- 종교시설 주관 모임·행사 등에서 식사나 숙박을 동반하는 경우에도,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*하되
 - * 실·내외 마스크 상시 착용, 유증상자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, 큰소리로 함께 기도·노래하는 행위 금지 등
 - 식사는 종교시설 내 식당·카페 등 <u>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별도의 장소</u>가 있는 경우, 식당·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 가능
 - 숙박이 동반되는 경우, 가급적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

Q10. 종교시설 내 관리자·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수 없는 것인지?

- 종교시설의 책임자·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
 - 단, 교인,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

Q11.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?

○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

Q12.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?

-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,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 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,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.
 -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,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되므로 보 충형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되는 교습, 소모임 등도 금지됨.
 - * 다만, 시민단체·법인·개인 등이 학생,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 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, 학원 방역수 칙을 적용함

Q13.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?

-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·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, 종교시설 방역수칙*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1~4단계 운영 가능
 - * 공통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 먹기, 노래·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 가수칙 준수
 -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·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
 - 다만, 아동·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,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(수강료, 이용료 등 납부)로 운영되는 보육활동·

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

※ 교리·목회자 양성,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,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/대안학교(학원수칙 적용),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

Q14.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시설 주관의 돌봄활동에 참여가능한 단계별 인원은?

- 감염병 유행상황과 지역 내 돌봄활동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
 - ※ 지역아동센터 등 유사 사회복지시설의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규모 등을 참조 가능

Q15. 백신 접종을 한 경우,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종교활동을 할 수 있나요?

- 백신 접종자(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포함)*는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 원에서 제외되며,
 - * (예시) 2단계 지역에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종교시설은 정규 종교활동시 3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나, 1차 이상 백신접종자가 15명이 있는 경우 비접종자 30인을 포함하여 최대 45명 참석 가능
 - 접종완료자*(2차 접종 후 14일 경과)로만 구성된 경우, 마스크를 착용하고 2m(최소 1m) 거리두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성가대·찬양팀 및 소모임 활동 운영 가능
 - *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,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

Q16. 백신 접종을 한 경우, 2~3단계 실외행사 가능 인원 수에서도 제외되나요?

- 접종 완료자는 종교시설 주관 2~3단계 실외행사의 경우에도 인 원 수 산정 시 제외됨
 - * (예시) 식사·숙박을 하지 않는 경우, 2단계 지역에서 99명까지 실외행사가 가능→접종완료자가 1명 있는 경우 비접종자 99명을 포함하여 총 100 명 참여 가능